2019년도 제2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o 일 자 : 2019. 10. 16.(수요일)

o 방 법: 온라인심의

o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

- 심의위원 : 박성호 위원, 임진모 위원(분과위원장 대행)

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**의결안건**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•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-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7건(안건번호 제 2019-133139호~133238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 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음악 "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, 널 사랑하는 거지"(가수 악동뮤지션) 등을 비롯하여 모두 음악콘텐츠에 관한 사안들로서,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
- B 위원 : 133139호부터 133238호까지 100건의 경우 최신 가요에 대한 불법 복제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

2019년 제22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10. 16.

분과위원장 대행 임진모

위원 박성호